

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398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19. 11. .
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법제처 및 교육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평생교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3항에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, 상위법에 맞게 학습자 안전조치 조문 삭제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9. 10. 4. ~ 2019. 10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제13조(학습자 안전조치) 구청장</u> <u>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3항</u> <u>에 따라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</u> <u>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</u> <u>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</u> <u>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</u> <u>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</u> <u>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</u> <u>다.</u></p> | <p><삭 제></p> |

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3호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단순 조례 개정으로 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- 교육지원과 행정7급 이민옥 (02-2286-5865)

< 관 계 법 규 >

□ 평생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(생략)
2. "평생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가. 이 법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 - 나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 - 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3. (생략)

제21조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~ ④ (생략)

제28조(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) ① ~ ② (생략)

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~ ⑤ (생략)